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정보보호비용 세액공제 신설〉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48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중소기업 정보보호비용 세액공제 신설(김태호의원안)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1. 9.

다. 회 부 일 : 2026. 1. 1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및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이나 전문인력 채용 등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단순한 침해 사고에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근의 정부 정책은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규제 강화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 전문인력 채용 비용 등 정보보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관련 투자 및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중소기업 정보보호비용 세액공제 신설(김태호의원안)

| 현 행                            | 개정안                                                                                                                                                                                                                                                                                                                                                                                    |
|--------------------------------|----------------------------------------------------------------------------------------------------------------------------------------------------------------------------------------------------------------------------------------------------------------------------------------------------------------------------------------------------------------------------------------|
| <input type="checkbox"/>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정보보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정보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보험 가입, 전문인력 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li> <li>○ 공제율: 30%</li> <li>○ 공제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li> <li>○ 중복지원 배제,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최저한세, 이월공제 적용</li> <li>○ 적용기한: 2030. 12. 31.</li> <li>○ 시행일: 2027. 1. 1.</li> <li>○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정보보호비용부터 적용</li> </ul> |

\* 김태호의원안 2026. 1. 9. 발의(의안번호 15948)

☐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보험 가입, 전문인력 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30%를 공제하는 정보보호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과 암호·인증·인식·감

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을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임.<sup>1)</sup>

최근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음. 2025년 4월에는 SK텔레콤이 평소 대비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인지하고 4월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였음. 조사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음.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비밀번호 관리 강화, 주요 정보 암호화,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음.

또한, 2025년 하반기에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 나.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발생했고, 사실상 대부분의 고객 계정(3,300만 개 이상)에 대한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전직 개발자가 재직 중 탈취한 내부 인증/보안 키를 이용해 고객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록(여러 배송지, 수령인 정보 포함), 일부 주문 내역 등에 접근하고 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됨.

정부는 과기정통부, 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개인정보위, 방미통위, 금융위,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으로 구성된 ‘쿠팡 사태 범부처 전담반(TF)’을 가동하여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의혹 규명에 노력하고 있음.

□ 개정안은 SK텔레콤 및 쿠팡과 같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보안 투자확대를 늘리기 위한 세제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정보보호에 충분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는데, 종사자 25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정보보호 정책 보유율은 98.7%이고, 조직 보유율은 87.0%에 달하는 반면, 10~49명 기업은 정책 보유율이 48.9%, 조직 보유율은 2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

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 2024

### [기업 규모별 정보보호 정책·조직 보유율]

(단위: %)

| 구분     | 10~49명 | 50~249명 | 250명 이상 |
|--------|--------|---------|---------|
| 정책 보유율 | 48.9   | 58.7    | 98.7    |
| 조직 보유율 | 26.2   | 60.4    | 87.0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보안 역량 강화 방안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중소기업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518건에서 2024년 1,57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4년 전체 신고 건수(1,887건)의 약 83.5%가 중소기업 신고 건이었음.<sup>3)</sup>

### [기업 규모별 침해사고 신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8월 |
|------|------|-------|-------|-------|----------|
| 대기업  | 20   | 31    | 54    | 56    | 52       |
| 중견기업 | 62   | 78    | 120   | 141   | 149      |
| 중소기업 | 518  | 954   | 1,034 | 1,575 | 1,185    |
| 비영리  | 40   | 79    | 69    | 115   | 87       |
| 합계   | 640  | 1,142 | 1,277 | 1,887 | 1,473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보안 역량 강화 방안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에 수반되는 비용을 완화하면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3) 국회입법조사처,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보안 역량 강화 방안

둘째, 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크게 나타나므로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음.

2020년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국내 기업부문 연간 피해액은 사고 조사, 대응, 복구 등 직접비용과 예방비용 및 기업 가치손실 등 간접비용을 합산한 결과 약 6,956억원으로 추정되었고, 시간 손실, 정신적 피해 등 개인의 피해비용을 산출한 결과 약 9,834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sup>4)</sup>

또한, 침해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금융정보 탈취, 신원 도용과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sup>5)</sup>

□ 다만, 재정경제부는 정보보호는 기업의 기본적 책무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정부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대상이 아니고,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채용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4)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제·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2021. 12.

5) 2021년 미국 이동통신사 T-Mobile이 해킹되어 약 4천만 명 이상의 성명,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등이 유출되고 그 중 1,310만명은 IMSI, IMEI 정보까지 유출되었는데, 일부 피해자들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피싱 문자를 받는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고되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2025. 5.)

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sup>6)</sup>

그러나 이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여력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55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